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07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찬우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경남 함안군 B 전 1088㎡에 관하여,
가. 피고가 C와 2018. 8.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0. 접수 제14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D이 설립한 E요양병원을 임차한 후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하여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F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8. 6.경까지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의 공소사실(의료법위반) 및 위 병원을 운영하며 2011. 10. 26.부터 2017. 12. 5.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8,637,474,7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04, 2019고합51(병합)호로 기소되어, 2019. 12. 19.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한 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9. 7.경 C에게 환수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C은 2018. 8. 14. 자녀인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전 10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0. 접수 제143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8. 8. 14.경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합계 64,936,460원¹⁾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가액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소극재산으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즈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 사건 부동산: 14,252,800원(= 13,100원×1088㎡)

○ 경남 함안군 G 전 241㎡: 978,460원(= 4,060원×241㎡)

○ 경남 함안군 H 전 1,269㎡ 중 1/2 지분: 13,705,200원(= 21,600원×1269㎡×1/2)○ 창원시

성산구 I상가 J호 60㎡ 중 1/10: 36,000,000원(= 6,000,000원×60㎡
×1/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16~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비록 원고가 C에게 환수내역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인 2018. 8. 14. 이후이지만,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요양기관인 E요양병원에게 개개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때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8. 14.에는 적어도 C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38,637,474,70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0. 접수 제143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정할 뿐이며, 같은 법 제57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0조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또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를 3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최초 발생일은 2011. 10.경)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25.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G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9. 10. 28.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최초의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분묘가 있는 토지로서 장차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기 위해 피고가 물려받은 것이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창원지방법검찰청은 2017. 12.경 C의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C은 2018. 9. 14. 구속되어 2018. 10. 10. 구속기소된 점, 피고는 C의 아들이로서 C의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이 갑자기 제사의 주재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8. 14. C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거액의 환수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성

$$1) 14,252,800 + 978,460 + 13,705,200 + 36,000,000 = 64,936,460$$